

철스크랩 운반 전용차 (일명 방통차)
RFID 표식판 관련 안내

2014년 2월

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

1 방통차 구조변경 업무에 대한 안내

□ 방통차 구조변경 개요

○ 추진 배경

- 철스크랩 운반 시 낙철로 인한 도로파손 방지 및 차량 안전운행 필요
- 불법차량 단속으로 인한 철스크랩 수급 불안정 해소
- 현실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적재함 불법 구조변경 차량의 합법화 필요

○ 구조변경 승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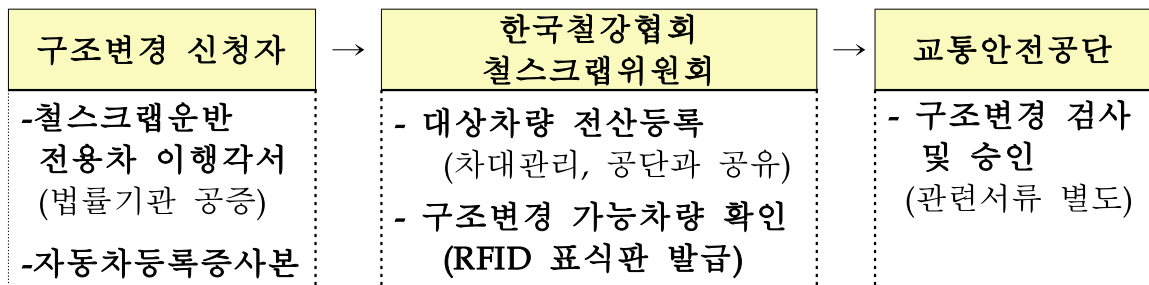
- 국토부의 「민생고 해결 관련 경제활성화 제도개선」 사업 일환으로 방통차 구조변경 승인 (교통안전공단 지침)
- 관련법 * 자동차관리법 제34조 (자동차의 구조·장치의 변경)
*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(구조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)
* 교통안전공단 검사정책지원팀 - 42호 (2008. 09. 01)
「철스크랩 운반전용」 자동차 구조변경 관련 업무지시

□ 방통차 구조변경 업무흐름

○ 방통차 정의 (교통안전공단의 방통차 구조변경 운영 지침)

- 최대적재량 9.5톤 및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자동차 중 철스크랩 낙하·비산방지를 위해 적갈색 도장의 옆면 보호대를 차체 제원 높이 기준 3,500mm 이내로 설치하고 양 측면에는 노란색 철스크랩 운반 전용 문구와 앞 유리창에는 「한국철강협회에서 제작한 표식」을 갖춘 자동차

○ 방통차 구조변경 절차



※ RFID 표식판의 역할(중요성)

- * 방통차 전산시스템(공단과 철강협회 연계)에 등록된 구조변경 대상 차량임을 확인하는 표시
- * 차량관리(차량정보, 불법 구조변경 단속 등)의 기본 수단

□ RFID 표식판 교체 주기 및 미 교체 차량 벌칙 규정

○ 발급일 기준 2년마다 RFID 표식판 교체해야 함

- 근거 : 철스크랩 운반 전용차 이행각서 제4호 (RFID 표식판)

○ 미 교체 차량에 대해 벌칙 적용

- 근거 : 철스크랩 운반 전용차 이행각서 제5호 (벌칙)

* 철스크랩 운반 전용차 용도 해지 및 10일내 원상복구

* 2년 동안 철스크랩 운반 전용차로 구조변경 허용 안됨

□ 운송회사에 대한 협조 요청

○ 귀사 소속 방통차가 RFID 표식판의 교체기일(2년)을 초과하여 벌칙을 받지 않도록 해당차량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귀사에 RFID 표식판의 교체기일(2년)을 초과한 방통차가 다수일 경우 귀사의 신규차량 등록 과정에서 일부 불이익이 예상되오니 귀사 방통차의 RFID 표식판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구조변경을 원하는 차량의 전산등록 여부 확인

- ① 구조변경을 받으려는 차량은 자동차등록증에 「철스크랩운반전용차」로 구조변경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.
 - 철스크랩 운반차는 차대번호로 관리됨으로 구조변경 업무에서 차량 번호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.
- ② 해당 차량이 구조변경을 획득했는지를 알 수 없을 경우 자동차등록증에 있는 차대번호를 준비하여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로 해당차량의 상태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전화) 02 - 559 - 3563 팩스) 02 - 559 - 3559

□ RFID 표식판 신청

신규 발급

- 준비서류 : 철스크랩운반전용차 이행각서, 자동차등록증 사본
 - 철스크랩운반 전용차 이행각서는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 (www.steelscrap.or.kr)에서 다운로드 받아 내용을 작성합니다.
- 신규발급 안내
 - ① 「철스크랩운반 전용차 이행각서」를 작성하여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습니다.
 - ② 공증받은 서류원본을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로 등기발송합니다. 이때, RFID 표식판을 받을 분의 주소, 성명, 핸드폰 번호를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.
 - 발송처 :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(가락동 78) IT 벤처타워 동관 15층
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 사무국
 - ③ 공증서류 발송 후 RFID 발급비 140,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. 이때, 입금자는 RFID 표식판을 받을 분의 성명과 일치해야 합니다.
 - * 계좌 : 1005-601-356277(우리은행), 예금주 : 한국철강협회

재발급

○ 준비서류 : 철스크랩운반전용차 이행각서, 자동차등록증 사본

- 차량 정보가 변경됐을 경우

: 철스크랩운반전용차 이행각서(공증), 자동차등록증 사본

- 차량 정보가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

: RFID 표식판 재발급 요청서, 자동차등록증 사본

○ 재발급 안내

① 차량정보가 변경됐을 경우 : 신규차량 신청방법과 같습니다.

② 차량 정보가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

: 준비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. 이때, RFID 표식판을 받을분의 주소, 성명, 핸드폰 번호를 “RFID 표식판 재발급 요청서”에 적어주셔야 합니다.

③ 서류신청 후 다음 중 해당되는 RFID 재발급 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.

가. 신규발급 2년 이내 분실 등으로 재발급 받는 경우 : 70,000원

나. 신규발급 기준 2년 경과 후 재발급 받는 경우 : 62,000원

다. 상기 “나”에 의한 재발급 후 분실 등으로 재발급 받는 경우

: 31,000원

※ 입금자는 RFID 표식판을 받을 분의 성명과 일치해야 합니다.

또한, RFID 재발급 상황은 차대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* 계좌 : 1005-601-356277(우리은행), 예금주 : 한국철강협회

첨 부 : 철스크랩 운반 전용차 이행각서 1 부
(RFID 표식판 재발급 요청서 포함)

철스크랩 운반 전용차 이행각서

차 량 번 호 :

차 명 :

소유자 성명 : (인) (연락처)

차 대 번 호 :

본인은 본인소유 화물자동차가 철스크랩 운반 전용자동차로서 구조변경 승인 후 다음 각 호를 준수할 것이며,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법적 책임 및 처분에 대해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확인합니다.

제 1 호 (철스크랩전용운반) 본인은 상기 차량이 「철스크랩 운반 전용차」로서 제강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복화수송 외에는 철스크랩만을 전용으로 운반하는 차량으로 운행할 것임

제 2 호 (구조변경 요령) 본인은 국토해양부, 교통안전공단, 한국철강협회의 「철스크랩 운반전용자동차 구조변경 요령」에 따라 철스크랩 운반차의 구조변경을 할 것임

제 3 호 (차량정보통보) 본인은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이외의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차량소유자 변경, 주소지 변경 등 상기 차량에 대한 변동사항 발생 즉시 그 내용을 한국철강협회로 통보하여 차량관련 정보가 수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임

제 4 호 (RFID 표식판) ①본인은 철스크랩 전용 운반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판 「철스크랩 운반 전용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RFID가 부착된 표식판 (이하 “RFID 표식판” 이라 한다)」을 이용한 불건전한 행위 방지를 위해 매 2년마다 한국철강협회가 변경 제작하는 RFID 표식판을 다음 가항의 기준에 의해 교체하고 이를 차량 전면에 부착할 것임
가. RFID 표식판 교체기준 : RFID 표식판 발급일 기준 매 2년마다

②본인은 한국철강협회가 발행한 RFID 표식판의 파손으로 교체해야할 상황 발생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파손된 RFID 표식판 (RFID TAG 포함 포함 필수)과 함께 한국철강협회로 발송하여 확인 후 재발급 받도록 할 것임

③본인은 한국철강협회가 발행한 RFID 표식판은 상기 차량이 철스크랩 운반 전용 차량임을 표시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, 동 표식판의 무단 복사, 임의 제작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, 이러한 행위 적발 시 한국철강협회, 교통안전공단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취해 질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할 것임

제 5 호 (벌칙) 본인은 상기 각호 위반시 타의적으로 철스크랩 운반 전용차용도 해지 및 10일 이내에 원상복구 검사를 완료할 것과 2년 동안 철스크랩 운반 전용차로 구조변경이 허용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법적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

20

성 명 : (인) (주민번호 : -)

한 국 철 강 협 회
철스크랩위원회장 귀하

